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레코드회사, 음악CD시
장에서 경쟁제한행위
에 대하여 FTC와 화해
- 5개의 배급회사 모두 가격
광고정책 중지 합의 -**

FTC는 금일, CD가격에 영향을 주는 위법한 광고정책을 종료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구입되는 모든 CD의 약 85%를 판매하는 녹음음악의 5대 배급회사인 Universal Music and Video Distribution, Sony Corp. of America, Time Warner Inc., EMI Music Distribution 및 Bertelsmann Music Group(BMG)과 각각 화해키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의심결안에 따르면 5개사가, 소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높은 CD가격을 과하도록 하고, 또한 유통업자에게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 위해 위법하게 기존의 협조적 광고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고 한 FTC의 소추를 해소시키게 될 것이다. 심판개시결정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FTC가 행하는 광

범위한 산업항단적인 조사의 정점에 서있는 것이다. FTC의 심결은 모든 사업자에 대해 「최저광고가격」(Minimum Advertised Price, 이하 "MAP"라 함) 프로그램을 7년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FTC는 과거 3년간에 걸친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가 본래 지불해야 할 가격보다도 4억 8천만달러 더 많게 CD와 다른 음악에 대해 지불했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동 동의심결은 이러한 정책을 제거하고 연간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음악소매시장에 필요한 경쟁을 회복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다.

FTC의 심판개시결정서에 의하면, 각 사는 소매업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협력적 광고료의 지불과 교환에서 배급회사에 의해 설정된 MAP 이상으로 CD에 광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소매업자 점포 내의 표식,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이번의 규제는 완전하게 소매업자에 의해 자금이 제공된 광고에까지도 적용된다. 이 정책에 따라서 만일 MAP정책에 추종한다면, 대형음악소매업은 일년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심판개시결정서에는 디스카운트(discount)소매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어떻게 MAP정책이 적용되는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주요한 소비자(대상)가전점을 포함해 많은 새로운 음악소매점이 고객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CD판매를 개시하였다. 보다 많은 전통적인 음악소매점도 역시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다. 대중적인 CD가격이 9.99달러까지 내려갔으며, 이 소매 「가격전쟁」은 미국 소비자에 대한 CD가격을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FTC는 레코드회사가 「가격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서 MAP정책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의 심판개시결정서에 따르면 이러한 MAP정책은 위법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격전쟁」은 정책이 도입된 CD의 소매가격이 상승한 후 바로 종료되었다. 이외에 배급회사는 가격을 올렸고, 1997년 이후 음악도매가격이 상승하였다. FTC의 심판개시결정서에는 각 배급회사가 수행한 MAP정책이 이른바 「합리의 원칙」하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FTC법 제5조에 위반되고 또한 MAP정책이 시장참가자에 의한 통모나 상호의 존행위의 위협을 증가시키는 위법한 「조장행위」라는 것이다.

동의심결안은 5개사 모두에 대하여

향후 7년간, 소매업자의 고객에 대한 광고가격과 판매촉진자금을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후 13년간, 사업자는 자기가 지불하지 않은 광고에 포함된 가격에 대해 판매촉진금의 조건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동의심결은 또한 사업자에 대해 소매업자의 가격을 근거로 하는 여하한 소매업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2000. 5. 10, FTC 발표

미 법무부, 식육포장업체 제휴 조사

미국 법무부는 6개 식육포장업체들이 고안중인 사업체 대상 인터넷 웹사이트가 연방 반트러스트법 위반인지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년 4월, 10명의 미네소타 주 의원들이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에 대해 쇠고기 및 가금제품 판매, 서비스 및 정보 관련 온라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합작투자사업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Joel Klein 반트러스트국장은 동국은 "이 새로운 합작투자사업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 합작투자사업의 형성 내지 운영이 제조합체 및 소비자들에게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당해 합작투자사업이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Klein 국장

은 이번 주 주정부 관리들이 접수한 서신을 통해 언명하였다.

이번 조사를 요청한 주 의원 중 한 명인 Doug Peterson 의원은 이번의 2,000만 달러 규모의 전자상거래 합작투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각각의 고객들을 외면함으로써 공급을 통제하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는 연방당국이 이 합작투자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응한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는 이 합작투자사업이 농민, 소비자 및 소규모업체들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식육부문의 OPEC' 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제휴는 카길사의 식육사업부문, Excel Corp., IBP, Smithfield Foods사 및 Tyson Foods사가 포함되어 있다. 6개 식육포장업체의 총 연간매출액은 400억 달러 정도이다.

Tyson사 대변인인 Ed Nicholson은 "가격고정과 관련한 어떠한 담합도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을 OPEC에 비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Excel사의 홍보부장인 Mark Klein은 "우리는 어떠한 조사에도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IBP사의 대변인인 Gary Mikelson은 조사관들은 조사결과에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이 알게 될 사실은 동사업이 독립적 회사로 의도된 것이라는 것이다. ... 오히려 어느 쪽인가 하면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하였다.

동 합작투자사업은 아직 형성단계이지만, 쇠고기 및 가금제품의 구매자들

과 판매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제품의 비교 및 가격협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류작업 및 기타 업무중복을 줄이게 될 단일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참가업체들은 말하고 있다.

■ 2000. 6. 13, Los Angeles Times

FTC, Swedish Match사의 씹는담배 브랜드 취득 저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억 6,500만 달러 규모로 National Tobacco사의 씹는담배 브랜드를 취득하겠다는 Swedish Match사의 제안을 저지하였으나, 당해 스웨덴 회사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6월 23일 밝혔다. Red Man 담배를 제조하는 Swedish Match사가 Beech Nut과 같은 브랜드를 National Tobacco사로부터 매입하게 될 당해 거래는 이 계획이 지난 2월에 공표되면서 심사를 받아 왔다.

6월 22일의 성명에서 FTC는 당해 취득을 저지하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취득은 낱개 씹는담배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반트러스트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당해 거래로 인해 Swedish Match사의 시장점유율은 미국 내 판매량의 60%로 높아질 것이며 2대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0%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반경쟁적 가격인상은 단지 금전자산을 소비

자로부터 담배회사로 이전시킬 뿐이다"라고 FTC 경쟁국장인 Richard G. Parker는 성명을 통해 말하였다. "기업들이 기업결합 또는 취득을 통해 경쟁을 제거하여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Swedish Match사의 사장인 Lennart Sunden은 23일 동 회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내 무연담배시장에서 경쟁하려는, 그리고 이 거래를 완성시키려는 우리의 결의에 비추어, 우리는 National Tobacco사와 함께 ... 미국 연방법원 체계 내에서 추가적 심사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Sunden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무연담배는 스톡홀름에 소재하고 있는 Swedish Match사의 핵심사업 부문이며, 동 기업은 또한 여승연 및 파이프담배, 성냥 및 라이터도 제조한다.

National Tobacco사는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North Atlantic Trading Co. In.의 한 사업부문이다.

■ 2000. 6. 23, The New York Times

E U

**유럽위원회,
해운회사에 의한 유럽·극동지역에 있어서
위법한 가격결정에
대해 제재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공표된 운임표에 대하여 할인을 제한하지 않기로 합의한 15개의 해운사업자에 대하여 제재금을 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사업자는 현존하지 않는 극동무역에 있어서의 운임표 및 추가요금(surcharge)에 관한 협정(이하 "FETTCSA"라고 함)의 참가자였던 Hapag Lloyd Container Linie GmbH사(독일), A.P.Moller Maersk Sealand사(덴마크), 그리고 P&O Nedlloyd Container Line Ltd사(영국)를 포함하고 있다. 제재금은 총액 700만 유로에 못미치는데, 이것은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한 협정이 가격고정 카르텔보다도 손해가 적다는 사실에 따라 약간 적은 액수이다.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담당위원은 "정기선동맹에 있어서 사업을 행하는 해운회사는 통상의 유럽경쟁규칙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관대한 적용면제의 이익을 받고 있다. 동맹은 동맹 밖에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독립의 해운회사로부터 실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FETTCSA의 사례는 위원회가 동맹참가자와 비동맹회사가 동시에 카르텔 통모를 행한 경우에는 엄정히 대처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상기 결정을 함에 있어 위원회는 할인하지 않기로 한 종전의 FETTCSA 당사자의 협정은, EC조약 제81조제1항에 위반되고, 정기선동맹의 일괄적 용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EC조약 제81조제3항의 개별적용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결정은 또한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재금액 내역 〉

(단위: 유로)

1	CMA CGM SA(프랑스)	134,000
2	Hapag Lloyd Container Linie GmbH(독일)	368,000
3	川崎汽船(株)(일본)	620,000
4	A.P.Moller Maersk Sealand(덴마크)	836,000
5	Malaysian International Shipping Corporation(말레이시아)	134,000
6	商船三井(株)(일본)	620,000
7	Neptune Orient Lines Ltd(싱가폴)	368,000
8	日本郵船(株)(일본)	620,000
9	Oriental Overseas Container Line Ltd(홍콩)	134,000
10	P&O Nedlloyd Container Line Ltd(영국)	1,240,000
11	Cho Yang Shipping Co., Ltd(한국)	134,000
12	DSR-Senator Lines GmbH(독일)	368,000
13	Evergreen Marine Corp Ltd(대만)	368,000
14	Hanjin Shipping Co., Ltd(한국)	620,000
15	Yangming Marine Transport Corp(대만)	368,000

■ 2000. 5. 16,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
수직적 제한에 관한
가이드 라인 공표**

EU는 5월 24일 EC조약 제81조에

의한 수직적 거래에 대한 평가의 기본적인 검토방향을 공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제81조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제2부; 제81조제1항의 범위 외의 수직적 협정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참가사업자 모두의 합계시장점유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8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요성이 적은 협정에 관한 1997년 고시(97/C372/04))(제9항).

· 진정한 위탁계약에 있어서 본인과 수탁자간의 제한은 제8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2항).

제3부; 1999년 12월에 공표된 유럽 위원회 일괄적용면제규칙(No2790/1999)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 공급자 또는 구입자의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법성의 추정을 받는다(제21항).

· 수직적 협정의 정의(제23항)

· 일괄적용면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hard-core거래제한(재판매 등)의 범위(제46항)

제4부; 일괄적용면제규칙의 철회 및 미적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수직적 협정이 제8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제81조제3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철회 절차(제71항)

· 유사한 수직적 협정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이때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럽위

원회가 일괄적용면제의 대상 외로 할 수 있다(제80항).

제5부; 시장의 정의와 시장점유율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 일괄적용면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제품시장, 지리적 시장의 정의(제90항)

· 일괄적용면제규칙의 대상 외의 수직적 협정의 평가에 있어서의 시장의 획정(제96항)

제6부; 일반적인 분석의 틀과 수직적 거래에 있어 개별사례에 대한 위원회의 운용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 수직적 제한의 소극적 효과

- ① 경쟁자의 배제
- ② 브랜드간 경쟁의 감소
- ③ 브랜드 내 경쟁의 감소
- ④ 시장통합에 있어 장벽이 생기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제103항).

· 수직적 제한의 적극적 효과

- ① 다른 유통업자에 의한 무임참입 문제의 해결
- ② 새로운 시장의 개척 및 참입
- ③ 무임참입 문제에 있어서의 품질 보증
- ④ hold up(강탈) 문제
- ⑤ 실질적인 노하우 이전 사례에서 생긴 특별한 「hold up」 문제
- ⑥ 유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 ⑦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완전성의 보충
- ⑧ 품질의 통일 및 표준화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제116항).

· 수직적 제한의 평가절차(제120항)

① 제일 먼저 관련 사업자가 공급자와 구입자의 시장점유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시장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② 만일 관련 시장이 30% 한도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협정은 hard-core의 제한과 조건하에서 일괄적용면제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③ 만일 관련 시장이 30%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직적 합의가 제81조제1항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④ 수직적 합의가 제8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의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81조제1항 관련 요소

- 공급자의 시장지위, 경쟁자의 시장지위, 구입자의 시장지위, 진입장벽, 시장의 성숙성, 거래의 단계, 제품의 특성, 기타 다른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제81조제3항의 적용조건

- ① 당해 협정이 제품 또는 유통의 개선, 또는 기술 또는 경제적 진보를 촉진하는데 기여하여야 하고, ② 당해 협정이 소비자에 대해 이익을 공평히 분배하여야 하고, ③ 당해 협정이 당해 이익의 달성에 필수불가결이 아닌 수직적 제한을 관계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④ 당해 협정이 대상제품의 실질적 부분에 관하여 경쟁제거의 가능성을 사업자에게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제134항).

다음으로, 개별 사례의 분석에 있어 단일브랜드 계약, 배타적 유통계약, 배타적 고객분할 제한, 선택적 유통, 프

랜차이즈, 배타적 공급계약, 끼워팔기, 권장최고재판매가격, 기타 계약의 사례를 설명, 상기 요소에 기초하여 분석을 하게 된다.

■ 2000. 5. 24,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 Veba/Viag 기업결합 인가

유럽위원회는 6월 13일 독일 전력회사들인 Veba사와 Viag사의 기업결합을 인가하였는데, 이는 유럽 및 독일 전력시장에서의 추가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이다. 동 위원회는 또한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심사중인 RWE/VEW 기업결합의 상세한 내용을 공표하였는데, 연방카르텔청은 7월 10일 이전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결합이 성사되고 나면 유럽 제3위 및 4위의 전력회사들이 탄생하게 된다. 유럽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르면 이들 네 기업은 구 동독지역의 자산 대부분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에 구 동독의 독점기업이었던 Veag사와 광업회사인 Laubag사에 대한 지분이 포함된다. 베를린에 소재한 Bewag사, 그리고 RWE사의 Envia 배전사업에 대한 Veba사와 Viag사의 49% 지분도 또한 매각될 것이다. 이들 4개 기업은 또한 자신들의 동독 내 전력공급업체들을 통해 Veag사로부터 7년간 시장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독일 제3위의 전력회사로서의 Veag사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기업결합 후 탄생할 두 기업간의 모든 연계를 단절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Veba/Viag사는 VEW사에 대한 자신들의 20.4% 지분을 RWE/VEW사에 넘기는 대가로 Gelsenwasser사, Ruhrgas사 및 Gasag사에 대한 RWE/VEW사의 지분을 받게 된다. UBS Warburg사의 분석가인 Vicent Gilles는 "유럽위원회로서는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으나, 동 위원회는 독일에서의 경쟁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결정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몇몇 분석가들은 이러한 비교적 완화된 조건들은 독일의 19개 원자력발전소들의 단계적 폐쇄를 놓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전력회사들 간에 진행될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폐쇄는 베를린에서 6월 14일 밤부터 개시된다.

14일의 인가는 동 분야에서의 더 큰 규모의 M&A에 대한 전주곡일 수도 있다. Veba/Viag사의 주식은 다음 주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때 E.ON사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는데, 동 기업은 Suez Lyonnaise des Eaux사 및 스페인의 Endesa사와 논의를 가졌었다.

도이체 방크의 분석가인 Leuder Schumacher는 "관련 기업결합이 인가됨으로써 지금까지 보류상태였던 독일 내 900여개 전력회사들간의 기업결합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총 주식의 80% 이상이 매각될 Veag사는 통합된 구 동독지역

전력회사의 주축이 될 수도 있다. 유럽위원회 및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E.ON사, RWE/VEW사, 그리고 프랑스의 EdF사가 지분을 가진 EnBW사들에 대한 기업의 등장을 선호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미국 전력회사인 Southern사는 Veag사, 그리고 자신이 26%의 지분을 갖고 있는 Bewag사와의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한편 스웨덴의 Vattenfall사도 Veag사의 지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보다 심대한 문제는 유럽 최대의 가스 판매업체인 Ruhrgas사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RWE/VEW사는 동 기업에 대한 3.5%의 지분을 E.ON사에 양도하게 되는데, 이로써 E.ON사의 Ruhrgas사에 대한 지분은 10.4%로 높아지게 된다.

■ 2000. 6. 13, Financial Times

EU, 타임워너/EMI 기업결합 조사

소비자, 경쟁업체,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유럽위원회는 6월 14일 타임워너사의 한 사업부문인 워너뮤직사와 EMI사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전면적인 반트러스트 조사를 개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타임워너/EMI, 씨그램사의 Universal Music Group, Bertelsmann Music

Group과 소니뮤직사 이 4개의 기업이 15개 EU국가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유럽시장의 약 80%를 지배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반사업에서 타임위너/EMI사는 “세계 최다의 저작권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경쟁업체들보다도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동 위원회는 언급하였다. “아메리카 온라인사와 타임위너사간의 기업결합을 고려할 때 타임위너/EMI사는 ... 특히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음악유통에서 지배적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조짐이 있다.”

AOL사의 타임위너사 취득 제안은 별도의 EU 반트러스트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 유럽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음악 유통은 앞으로 수년간 중요도를 더할 것이며 인터넷 서비스 발달의 주요 동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동 위원회는 4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는 타임위너/EMI 기업결합에 대해 1개월 전 초기조사를 개시한 이후 소비자, 경쟁업체, 사업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 중 일부는 타임위너/EMI사가 자신들의 음악목록에의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 및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소규모 음반회사들이 신인 음악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고 동 위원회는 밝혔다.

영국의 EMI사는 비틀즈 및 롤링스톤스와 같은 거장그룹의 본산이다. EMI사와 타임위너사간의 기업결합으로

로 세계 최대의 음반회사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타임위너사와 EMI사는 새로이 탄생하게 될 기업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게 될 것인데, 이 새로운 회사는 연간매출액이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EU법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기업결합 내지 합작투자사업에 대하여 만일 이들이 15개 EU 회원국에서 경쟁을 왜곡한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기업결합 내지 합작투자사업을 저지하거나 주요한 변경을 명할 권한이 있다. 문제되고 있는 이번 기업결합은 아직 미국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타임위너사의 대변인인 Scott Miller는 “우리는 유럽위원회가 우리의 합작투자사업계획 심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대해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결합 인가를 받을 만한 강력한 논거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Miller 대변인은 동 기업은 금년 하반기 중에 기업결합 인가를 받을 것이며 연말 이전에 기업결합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 2000. 6. 14, The New York Times

EU, AOL/타임위너 기업결합 조사 개시

유럽위원회는 6월 19일, 아메리카 온라인사와 타임위너사간의 기업결합 계획에 대해 4개월간의 상세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연예계 회사와 인터넷 회사간의 장래의 연계에 대한 기본규칙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당해 초대형 기업결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동 위원회가 타임위너사의 음악사업부문과 영국의 EMI사간의 합작투자사업계획에 대해 유사한 조사를 개시한 지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의 반트러스트 감시당국인 유럽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이 인터넷을 통한 음악유통이라는 새로운 사업, 그리고 인터넷 접속 및 유료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주요 경쟁 현안은 타임위너사의 콘텐츠와 AOL사의 온라인 서비스간의 수직적 결합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AOL사와 독일의 베텔스만사의 공동판축, 유통, 판매 협정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타임위너사와의 기업결합의 결과, AOL사는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음악출판권 및 음악곡목의 주요 원천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OL사가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될 음악목록들의 강점 때문에 동 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음악 배급의 기술적 표준을 지배하고 음악연주 소프트웨어를 독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전략은 AOL사로 하여금 새로이 등장하는 온라인 음악 유통에서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OL사는 금년 가을에 당해 기업결합을 완료할 것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

다고 하였다. AOL사의 대변인인 Jim Whitney는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인가절차가 진행중이다. 우리는 동 위원회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서 공고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줄곧 말한 바와 같이, AOL사와 타임워너사의 기업결합은 전세계 소비자들에 대해 엄청난 이익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동 위원회는 AOL사가 베텔스만사와 AOL 유럽 법인간의 유럽지역 합작 투자사업에서 유래하는 베텔스만사와의 구조적 연계를 단절하기 위해 약간의 이행약속을 제안하였으나, 이들은 경쟁상 우려를 완화하는 데는 불충분하였다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AOL사가 미국 인터넷 시장에서의, 그리고 독점적 콘텐츠 및 서비스에서의 동 기업의 강력한 지위를 이용하여 유럽에서의 “다수의 인터넷 유료 콘텐츠 시장, 예를 들어 영화, TV 프로그램 및 금융시장 뉴스”에서 지배적 지위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또한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AOL사가 4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미국의 주도적 인터넷 회사이며 대부분의 EU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인터넷 회사라고 하였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AOL사와 방송계 대기업인 타임워너사는 지난 1월 1,25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래를 통해 기업결합을 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었다. 이 계획은 워너뮤직사가 EMI사와의 합작투자사업에 합의하기 직전에 합의되었다.

유럽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저지하는 일은 드물지만, 동 위원회는 경쟁상 우

려를 해소하기 위해 종종 기업들에게 자산매각과 같은 “서약”을 행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AOL/타임워너 기업결합은 미국에서도 심각한 규제문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전국방송업협회는 새로이 탄생하는 기업의 유선방송 프랜차이즈가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서비스를 AOL/타임워너 기간시설을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만 당해 기업결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단체들은 타임워너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새로이 탄생할 기업의 인터넷 방송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인 Road Runner의 잠재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2000. 6. 19, The New York Times

EU, 은행들의 가격고정 조사

유럽연합의 반트러스트 집행위원회는 6월 20일, 유럽위원회가 EU 은행들간의 가격고정의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다음 주에 4개국의 은행들 및 은행연합회에 이의성명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하였다. EU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유럽의회의 한 위원회에서 당해 EU 집행부는 금년 여름이 가기 전에 다른 은행들에게 이의성명서를 발송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모든 가격고정 협정은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라고 몬티 위원은 말하였는

데, 당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4개국에 소재한 120개의 은행 및 은행연합회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들 국가 및 은행들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유럽위원회의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11개 EU 회원국들이 1999년 1월 1일자로 공용통화로서의 유로화를 발족시킨 이후 부과된 환전수수료에 관한 일반대중의 이의제기가 있자 작년에 유로화 지역 은행들에 대한 수색을 단행하였다. 이들 은행은 현금 및 현금 외 자산의 이전, 그리고 환전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담합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2월, 유럽위원회 관리들은 독일의 도이체 방크와 드레스드너 은행, 프랑스의 Caisse Nationale de Credit Agricole과 소시에테 제네랄, 이탈리아의 저축은행들, 그리고 스페인의 Argentaria 은행과 Banco Bilbao Vizcaya를 수색하였다. 작년 10월의 추가적 수색은 Allied Irish Bank, Bank of Ireland, 벨기에의 KBC 및 네덜란드 Fortis 그룹의 사업 부문에 대하여 행하여졌다.

유로화 지폐 및 동전은 2002년까지는 도입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여행객들은 한 유로화 지역 국가에서 다른 유로화 지역 국가로 이동할 때 여전히 환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유로화 지역 내의 환율은 고정되어 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은 은행들이 여전히 환전 시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작년에 유로화 지역의

238개 은행에 대하여 유로화 지역 통화를 환전하는 데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 2000. 6. 20, The New York Times

**유럽사법재판소,
폭스바겐사 관련
유럽위원회 결정 지지**

유럽사법재판소는 7월 6일, 독일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사가 이탈리아에서 1990년대에 위법한 판매관행을 따랐다는 결정을 지지하였으나 벌금액은 11.8% 인하된 8,220만 달러로 감액하였다. 감액된 수준으로도 당해 벌금은 유럽위원회가 단일한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최고금액이다.

동 재판소는 폭스바겐사는 이탈리아 자동차 판매업체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에 대하여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를 이들의 본국 내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킴으로써 EU 공정경쟁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EU 집행부적인 유럽위원회의 1998년 결정을 지지하였다. "폭스바겐사에 대한 주장은 정확하였다"라고 동 재판소는 판결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처음에는 폭스바겐사에 1억 200만 유로화(9,7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었다. 동 재판소는 당해 침해행위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되었지만 유럽위원회가 이행위가 그 이상 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벌금액을

9,000만 유로화로 감액하였다.

"이 판결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EU 반트러스트 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말하였다.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유리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로(EU) 단일시장의 주요 이익 중의 하나이다."

폭스바겐사는 항소를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다임러크라이슬러사, 볼보사, 르노사, 푸조사 및 시트로엥사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해 벌금은 1995년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이후에 폭스바겐사를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의 폭스바겐 및 아우디 판매업체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에의 판매를 금지하려 한 행위는 "EU ... 단일시장의 근본적 목표 중 하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하였다. 몬티 위원은 자동차업체들은 15개국으로 구성된 EU 내에서 자사의 유통 시스템을 조직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련규칙은 또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하는 회원국 내에서 직접 또는 인가된 중개인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불변의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유럽위원회의 조사결과 폭스바겐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되었었다:

- 이탈리아의 50개 판매업체에 대하여 이들이 만일 외국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판매대행계약이 종료될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12건의 계약

이 "실제로 종료되었다."

-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이탈리아 판매업체들에 대하여 이윤폭 및 보너스를 감축하였고 선적량을 제한하였다. 1995년 "아우디 차 사업부문은 이탈리아인이 아닌 고객들에게 차를 판매한 업체들에게 약 8,000대의 차량 공금을 거절하였으며 명백한 경고를 보내었다."

- 이탈리아 판매업체들에 대해 외국인 고객들은 사양 및 보증기간 문제로 자신들로부터 차를 살 수 없다고 이들에게 말할 것을 통보하였다.

동 위원회는 자신의 조사결과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 사업부문은 "자신들의 관행이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하였다.

몬티 위원은 폭스바겐사 관련 결정은 유럽위원회가 "자동차 유통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 2000. 7. 6, The New York Times

**마이크로소프트사,
유선방송사 지분 제한
에 대해 EU와 합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유럽위원회가 영국 유선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Telewest Communications PLC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배적 지분 취득에 관한 원래 계획에 반대

하자 투자지분의 제한에 합의하였다. 당해 소프트웨어 대기업은 약 30억 달러로 Telewest사의 지분 23.7%를 매입할 것이지만 더 이상 AT&T Corp.의 유선방송 사업부문인 Liberty Media Group과 제휴하여 지배적 지분을 취득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동 위원회에 대하여 ... Liberty Media사와의 모든 구조적 연계를 단절하고 있으며 Telewest사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을 제공할 어떠한 권리도 포기할 것임을 통지하였다"라고 동 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하여 밝혔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반트러스트당국인 동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Telewest사에의 관여에 대해 더 이상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Telewest사에 대한 법적 지배권을 포기하게 되면 동 기업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분은 소수 지분이 되며, 이는 유럽연합 기업결합 규정상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동 성명은 언급하였다.

원래 계약 내용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사와 Liberty사는 Telewest사에 대한 공동 지배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었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유선방송 산업에서의, 특히 영국 내 셋톱박스 소프트웨어 공급에서의 경쟁에 대해 우려하였다. 3월 22일, 동 위원회는 당해 계약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8월 4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동 위원회는 5월에 당해 기업에 공식 이의성명서를 발송하였었다.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Telewest사에 대한 공동 지배권을 취

독한다면 동 기업은 영국 내 디지털 유선방송 산업이라는 신흥시장에서의 기술적 결정을 좌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동 위원회는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이용가능한 기술적 대안을 상당히 감소시켰을 것이며 가정용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변인인 Jim Cullinan은 당해 계약은 Telewest사로 하여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에 우리의 제품이 월등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당해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워싱턴 주 레드먼드에 소재하고 있는 당해 기업이 "당해 계약의 목적, 즉 영국 소비자들에 대한 광역대 서비스 제공의 촉진이라는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동 위원회의 우려사항을 취급하였다"고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당해 기업결합을 매우 신속히 완료하기를 희망한다고 Cullinan은 덧붙였다.

■ 2000. 7. 7, Los Angeles Times

독 일

월마트사, 독일 카르텔청의 조사에 직면

독일 카르텔청은 미국 소매업체인 월마트사 및 독일의 4개 슈퍼마켓 체인들이 위법하게 가격을 인하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1997년 월마트의 진출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치열한 가격경쟁은 당해 미국 그룹이 소매에 관련된 엄격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의제기를 낳았는데, 그 결과 예비적 조사가 개시되었다.

지속적으로 비용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독일 카르텔법상 금지되어 있는데, 동 법은 1999년 1월에 개정되었다. 당해 규칙은 소규모이며 가족 분위인 중소기업들이 대형의 경쟁업체와 계속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할인 및 영업시간 관련규제와 함께 독일 시장을 외국 소매업체들이 진출하기 힘든 시장으로 만들어 왔다.

본에 소재하고 있는 카르텔청은 6월 27일 동 당국이 최초 질문에 대한 월마트사의 답변을 평가중이며 추가적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 당국의 조치는 당해 미국 소매업체가 공격적인 가격인하 영업전략을 독일 시장에 도입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월마트사에 대한 의의제기를 접수한 후 카르텔청은 조사범위를 Aldi, Lidl, Plus 및 Norma 소매 체인으로 확대하였다.

월마트사는 1997년에 Wertkauf사를, 1999년에 InterSpar사를 취득함으로써 독일에 2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자금을 투자하였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월마트사가 독일에서 계속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크게 우려하여 왔는데, 독일에서는 기존 할인 소매업체들의 강점으로 인해 동 업체의 "매일 최저가격" 전략이 미국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덜 인식되어져 왔다. 관련된 독일 규칙의 옹호자들은 다수의 기업들간의 공정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가격 인하에 대한 압력이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Aldi사 및 Lidl사와 같은 체인점들은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저렴한 슈퍼마켓에 특화하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은 월마트사의 침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왔으며 최대 25%까지 가격을 인하하였다.

켈른에 소재한 경쟁 소매업체인 REWE사는 규제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몇몇 경쟁업체들은 법을 위반하여 가며 다수의 제품을 비공수준의 가격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명백히 파괴적 영업전략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록 월마트사의 점포는 독일 내에서 95개에 지나지 않지만, Aldi사 및 Lidl사는 당해 미국 소매업체의 저가 자체 브랜드 기초식품의 도입에 의해 위협을 받아 왔는데, 이 품목은 카르텔청이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몇몇 미국 분석가들은 월마트사가 개별 상품에 대한 단기적 판촉에 막대한 지출을 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로 선택하면서 동 기업의 "가격 환불" 캠페인이 독일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 2000. 6. 27, Financial Times

일본

공취위, 관제담합 방지 위해 법정비 검토

공정취인위원회는 6월 28일, 공공사업에서 공사를 발주한 관청측이 입찰담합에 관여하는 「관제담합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중시하여,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법 제정 및 독점금지법의 개정도 포함하는 법정비 및 회계감사원 등의 관계성청과의 연계강화를 검토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현행 독점금지법은 처분의 대상을 건설회사 등의 사업자에 한정하고, 발주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관청 스스로가 담합을 조장한 경우에도 관청에는 강제력을 수반함이 없이 개선을 구하는 「요청」을 내는 데 그치고 있었으므로, 공취위는 본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취위는 앞으로 실제로 일어난 관제담합의 예를 상세히 분석하여, 법률의 정비 등을 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1) 독점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재검토하여, 관제담합에 관한 벌칙의 명확화, (2) 행정처분의 강화에 대한 검토의 진행, (3) 회계감사원 등의 관계성청과의 밀접한 정보교환, (4) 관청의 발주담당자 및

상사의 직무상의 권한 및 책임범위의 명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취위에 따르면, 「관제담합사건」으로 적발된 경우는 1996년 이후에만도 9건에 달한다. 이 중 훗카이도청이 발주한 농업토목공사를 둘러싼 입찰담합에서는 독금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297개사에 배제권고가 행하여졌다. 그러나 법률 등이 미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관청 자체에는 개선을 문서로 요청하는 데 그치고 있어 비판이 강하였다.

■ 2000. 6. 29, 요미우리신문